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정 2023. 06. 14.

## 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 실천사항

### 1. 기본 원칙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.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.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 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 운용 실천사항

#### 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 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(2)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:

- “건설솔루션본부장”은 내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심의위원은 하도급 업무 관련 유관팀장들로 구성한다.

#### 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 (예상)금액이 **20억원 이상**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.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
(5)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(예시. 인사 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